

#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7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20일

발의자 : 금광연 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수정

나. 직위명 수정(안 제2조)

다. 지정기간(1년) 초과 가능한 예외 사유 반영(안 제3조)

\* 관련근거 :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」 제160조제1항

## 3. 참고사항

가. 개정규칙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결과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30. ~ 12. 5.

○ 의견내용 : 의견접수 결과 수정사항 있을 시 재배부 예정

##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”을 “하남시의회 직무대리 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조기관”을 “의회사무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부의장이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과장(담당관)”을 “의회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2.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.

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 
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 
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  
다. <단서 신설>

③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. 다만,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 
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 
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  
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 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(현행과 같음)